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람	기관의장

제1020호 2014. 4. 15.(화)

차 례

고 시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4-45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 1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4-46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 3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4-460호 인천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5
- 인천광역시 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2
- 인천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19

발행 : 인천광역시서구

편집 : 홍보미디어과 [032-560-4142]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4 - 45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제24조 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 04. 11.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부여·변경 도로명주소 : 인천 서구 옥빛로 4외 13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변경)사유	도 로 명 고 시 일	도 로 명 부 여 사유
		별 도 열 략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30)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4. 4. 11일자로 고시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조서

고시일 : 2014-04-11

연번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 사유	비고
1	인천 서구 경서동 976-55	옥빛로 4	2013-07-30	초록색의 옥빛에서 착안	
2	인천 서구 검암동 638-4	승학로422번길 27	2009-08-28	승학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4,22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3	인천 서구 신현동 272	가정로 375	2009-08-28	가정동의 동명을 땀. 가정동이란 명칭은 조선조 개국공신 조반이 말년에 이 곳에 와서 가정이란 정자를 세운 것에서 유래함	
4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440외 10필	가람로 48	2012-10-25	"강" 을 뜻하는 순우리말에서 착안	
5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516-9	원당대로 741	2008-12-31	으뜸이 되는 당이라는 뜻의 옛 지명에서 유래	
6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549-4	드림로 625-1	2009-07-10	수도권매립지내 조성예정인 드림파크와 연결되어 있는 도로	
7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508-13	검단로744번길 42	2008-12-31	검단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7,44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8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607-2	드림로 607-1	2009-07-10	수도권매립지내 조성예정인 드림파크와 연결되어 있는 도로	
9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464	원당대로 997-2	2008-12-31	으뜸이 되는 당이라는 뜻의 옛 지명에서 유래	
10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172-7	봉수대로1394번길 39-1	2009-07-10	봉수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394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1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666-1	서곶로 908-2	2009-09-22	서쪽으로 길게 뻗은 해안이라는 뜻으로 해안을 매립할 때 서곶이라는 이름을 남기고자 명명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4 - 46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폐지 고시합니다.

2014. 04. 11.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도로명주소 : 인천 서구 승학로422번길 27외 2건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도로명주소 폐지사유
	별 도	열 람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30)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조서

고시일 : 2014-04-11

연번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사유	비고
1	인천 서구 검암동 638-4	승학로422번길 27	2014.04.02	건축물 멸실	
2	인천 서구 가좌동 111-48	가정로138번길 29-1	2014.03.27	건축물 멸실	
3	인천 서구 왕길동 660-2	완정로117번길 59	2014.04.11	기존건물철거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4 - 460호

인천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서구 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4년 4월 14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개정이유

- 통장 위촉시 연령제한 규제를 없애 고령화시대에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고령층의 사회경제활동 참여 환경 조성
- 통반장 위촉시 결격사유를 조희하도록 하는 규정은 상위법에 결격사유에 대한 근거조항이 없어 신원조회 기관(등록기준지)에서 신원조회 사항을 통보받을 수 없음(조례 규정으론 불가능)
- 통장 연령제한 폐지로 인하여, 자연부락에만 별도 적용되던 연령 제한이 동일 해지면서 자연부락현황 별도 규정 불필요
- 동 주민센터 복지기능 보강에 따른 통·반장 임무 추가
- 알기쉬운 법령용어 및 띄어쓰기 등 재정비

2. 주요내용

- 현행 65세(자연부락은 71세)로 되어있는 연령제한 규정 삭제
- 제5조(통반장의 임기) 제3항

- 제3조(획정기준) 제3항 규정 삭제
- 제6조(통·반장 위촉 결격사유) 조항 삭제
- 제9조(임무) 조항에 통·반장의 저소득층 발굴, 후원자 개발, 부정수급자신고, 복지 정보안내 등 임무 추가
- 연령제한 폐지에 따른 제7조(통·반장 위촉) 제2항제2호 변경
- 조례 문맥에 맞지 않는 문구 개정(제16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 5. 7.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404-701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 ☎ 032-560-4514, FAX 032-560-2710]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4.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4조의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조의2제5항에 따라”로 한다.

제3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5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전단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전단 중 “30세 이상 65세인 사람”을 “30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로 하며, 같은 호 후단을 삭제한다.

제8조제2항 중 “의해”를 각각 “따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제7호로 한다.

6. 저소득층 발굴 및 후원자 개발, 부정수급자 신고, 복지정보 안내 등 복지도우미로서의 역할

제12조제2항 중 “지체없이”를 “지체 없이”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지급하며, 지급일 이후 해촉된 경우 해촉 익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당은 일할 계산하여 반납하여야 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는 사람은 통·반장이 될 수 없다.

-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4.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서 징계절차에 의해 면직처분을 받은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5. 법원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제7조(통·반장 위촉) ① (생략)

- ② 통장은 다음 각 호 기준에 적합한 사람을 동장이 위촉한다.
- 1. 당해 통 관할구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 신설되는 통의 경우는 거주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 2. 주민등록상 나이로 30세 이상 65세인 사람. 자연부락인 경우에는 30세 이상 71세인 사람으로 한다.

제7조(통·반장 위촉) ① (현행과 같음)

- ② -----
- 1. 해당 -----
- 2. -----30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후단 삭제>



3. (생략)

③ ~ ⑤ (생략)

제8조(통·반장 해촉 및 재·위촉 제한) ① (생략)

② 제1항제2호에 의해 해촉된 통·반장은 우리구에서 3년간, 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에 의해 해촉된 경우에는 당해 동에서 3년간 다시 위촉할 수 없다.

제9조(임무) ① 1.~5.(생략)

<신설>

6.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임무(평시, 전시 등) 또는 구청 및 구산하기관의 행정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12조(건의사항의 존중처리) ① (생략)

② 건의사항 중 자체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지체없이 해결하고 타기관 소관사항은 당해 기관에 통보하는 동시에 계속 긴밀히 협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생략)

3.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8조(통·반장 해촉 및 재·위촉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 따라 -----
----- 따라 -----
----- 해당 -----
-----.

제9조(임무) ① 1.~5.(현행과 같음)

6. 저소득층 발굴 및 후원자 개발, 부정수급자 신고, 복지정보 안내 등 복지도우미로서의 역할

7. -----

제12조(건의사항의 존중처리) ① (현행과 같음)

② -----
----- 지체 없이 -----
----- 해당 -----
-----.

③ (현행과 같음)



제16조(실비지급 등) ① 통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인 월정수당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하고 위·해촉 등으로 수당지급월에 신분상 변동이 있을 경우 근무한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며, 지급일 이후 해촉된 경우 해촉 익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당은 일할 계산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6조(실비지급 등) ① -----

지급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4 - 460호

인천광역시 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서구 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4년 4월 14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개정이유

- 장학금 지급 성적기준을 현재 고등학교 성적기준으로 변경
- 2년 이상 근속한 통장의 자녀에게 지급되고 있는 장학금은 통장 임기(2년)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임기를 마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하여 근속기준을 1년 이상으로 완화함
- 알기쉬운 법령용어 및 띄어쓰기 등 재정비

2. 주요내용

- 현행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이내”인 성적기준을 현재 고등학교 성적 기준인 9등급제를 적용 “학과성적 중 5등급 이상이 전체과목 수의 70퍼센트 이상인 재학생”으로 일부 개정함은 물론, 신입생의 성적기준을 구체화 하여 명문화시킴
- 현행 “2년 이상” 근속 기준을 “1년 이상”으로 완화하여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을 확대시켜 통장의 사기진작을 도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 5. 7.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404-701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 ☎ 032-560-4514, FAX 032-560-2710]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4.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서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서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서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자에게 지급하는 통장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사람에게 지급하는 통장 자녀 장학금”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년이상”을 “1년 이상”으로, “있는 자”를 “있는 사람”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품행이 단정하고 학과성적 중 5등급 이상이 전체과목 수의 70퍼센트 이상인 재학생. 다만, 신입생은 진단평가 또는 반 편성고사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인 사람

제2조제2호 중 “있는 자”를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3조 중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자 중에서 장학금”을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통장 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으로, “자를”을 “사람을”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자를”을 “사람을”로, “개시후 1월이내”를 “개시 후 1개월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1개월이내”를 “1개월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에 규정된”을 “장학생에게는 제8조에 따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가 다음 각호의 1”을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u>인천광역시서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장의 자녀로서 <u>고등학생중 성실하고 재능이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통장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u>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p> <p>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통장으로 <u>2년이상</u> 근속하고 있는 자의 자녀로서 다음 <u>각호의 1</u>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p> <p>1. <u>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중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이내에 해당하는 자</u></p> <p>2. <u>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나 시단위 이상 대회에서 3위내 입상한 실적이 있는 자</u></p> <p>제3조(추천) 동장은 <u>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자 중에서 장학금을 지급</u></p>	<p><u>인천광역시 서구 통장 자녀 장학금지급 조례</u></p> <p>제1조(목적) ----- ----- ----- <u>사람에게 지급하는 통장 자녀 장학금</u>----- -----.</p> <p>제2조(장학생의 자격) ----- ----- <u>1년 이상</u> ----- <u>있는 사람</u> -----<u>각 호의 어느 하나</u>----- -----.</p> <p>1. <u>품행이 단정하고 학과성적 중 5등급 이상이 전체과목 수의 70퍼센트 이상인 재학생. 다만, 신입생은 진단평가 또는 반 편성고사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인 사람</u></p> <p>2. ----- ----- ----- <u>있는 사람</u></p> <p>제3조(추천) ----- <u>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통장 자녀 장학</u></p>



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학년마다 선정하여 구청장에게 추천한다.

제4조(선발) ①구청장이 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일정한 기준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매학기 개시후 1개월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 학교간의 균형, 동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7조(장학금의 지급) ①장학금은 학기별로 학기개시후 1개월이내에 학교장을 통하여 지급하거나 또는 구청장이 직접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②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에 규정된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당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제8조(지급정지) ①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

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 사람을

-----.

제4조(선발) ①-----
----- 사람을 -----

개시 후 1개월 이내-----.

②----- 제1항에 따라

-----.

③ (현행과 같음)

제7조(장학금의 지급) ① -----
----- 1개월 이내

-----.

② ----- 장학생에게는 제8조에
따라 -----
- 해당 -----
-----.

제8조(지급정지) ①-----
--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지
금을 정지할 수 있다.

1. ~ 4. (생략)

②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
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
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1. ~ 4.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

-----.

인천광역시 서구청
www.seo.incheon.go.kr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4 - 460호

인천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서구 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4월 14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개정이유

- 현행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통장 후보자 심사를 위하여 심사기준표 재정비
- 조례 삭제규정 및 심사기준표 일부변경에 따른 별지 서식 변경 및 신설, 별표 삭제, 일부조항 변경
- 알기쉬운 법령용어 및 띄어쓰기 등 재정비

2. 주요내용

- 조례(연령제한 폐지) 및 통장후보자 심사기준표 [별지 5호서식] 평가항목 중 '최근 3년 이내 상훈'을 '해당 통 지역주민'으로 변경함에 따른 [별지 1, 3호 서식] 변경 및 [별지 제13호서식] 신설
- 통장 연령제한 폐지로 인하여, 자연부락에만 별도 적용되던 연령제한이 동일해지면서 자연부락현황 별도 규정 불필요
- 조례 제6조(통반장 위촉 결격사유) 규정 삭제에 따른 제7조 제2호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 5. 7.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404-701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 ☎ 032-560-4514, FAX 032-560-2710]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4.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3조를 삭제한다.

제5조제1항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7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9조제1항 중 “과반수이상”을 “과반수”로 하고, 제2항 중 “심사기준표에 의한다”를 “심사기준표에 따르며, 해당 통 지역주민의 세대주 동의사항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별지 제6호 서식”을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의거”를 “따라”로 한다.

제14조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별표를 삭제하고,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하고, 별지 제1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동 공 고 제 호

통 장 후 보 자 등 록 신 청 공 고

「인천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동 통장 후보자 등록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통장이 되고자 희망하는 주민께서는 후보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동 장

1. 후보자 등록대상 : 통장

2. 후보자 등록 신청

가. 신청서 교부(접수)기간 : 20 년 월 일 ~ 월 일(토요일, 공휴일 제외)

나. 신청장소·방법 : 동 주민센터에 직접 제출 (대리나 우편은 불가)

다. 자 격

- ① 통 관할구역 내에 1년 이상 거주(신설 통은 거주 제한을 두지 아니 함)하고 있는 30세 이상인 사람으로 통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사람
- ② 책임감과 사명감이 강하고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사람
- ③ 동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 성실하게 규정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

라. 제 출 서 류

- ① 통장 후보자 등록 신청서 및 이력서 (별지 제2호서식-동 주민센터 비치)
- ② 봉사활동 실적 및 참고자료
 - 봉사활동 : 사회단체로 등록되어 있는 단체로 최근 5년 이내의 실적
 - 그 밖에 신망도 평가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 (언론보도, 구보 등)
- ③ 해당 통 지역주민(세대주)의 통장 후보자 동의서 (별지 제13호서식- 동 주민센터 비치)

마. 위촉절차 및 방법

- ① 「인천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동장이 위촉
- ② 후보자 등록과 관련하여 접수된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바. 임 기 : 위촉일로부터 2년이며 3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총 8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 주민센터 032)560-0000으로 문의 바랍니다.



[별지 제5호서식]

통장 후보자 심사기준표

심 의 기 준			배점	성명 및 심사결과			비 고
총 점			100				
지역사회 기여도	1. 관할구역 거주기간	가. 5년 이상	10				◦ 주민등록등본 확인 ◦ 신설 통의 경우 동일점수 부여
		나. 2년 이상	7				
		다. 2년 미만	5				
	2. 최근5년간 사회봉사 활동실적	가. 100시간 이상	10				◦ 자원봉사 인증기관이 발행하고 자원봉사 프로 그램을 활용한 확인서만 유효
		나. 60시간 이상	7				
		다. 30시간 이상	5				
		라. 30시간 미만	3				
	3. 해당통 지역주민 동의	가. 10% 이상	10				◦ 세대주 동의 (별지 제13호서식)
		나. 5~10%	5				
다. 5% 미만		1					
업무수행 능력	4. 직업겸직	가. 직업 없음	10				◦ 사실확인
		나. 자유(영)업 종사	7				
		다. 직업 있음	3				
	5. 행정 관심도(참여)	가. 탁 월	30				◦ 구 및 동 업무내용 파악 등
		나. 우 수	15				
		다. 보 통	5				
면접평가	6. 면 점	가. 탁 월	30				◦ 질문 답변을 통해 확인 ◦ 질문서는 지침으로 관리
		나. 우 수	15				
		다. 보 통	5				

주) 모든 서류는 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동 통장위촉 심사위원 (서명)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조(용어의 정의) ① <u>예전취락이란</u> <u>자연스럽게 마을이 형성되어 주거형</u> <u>태가 유지되는 부락을 말한다.</u></p> <p>② <u>자연부락이란 예전취락과 개발사업</u> <u>등으로 새로운 주택이 혼재되어 있</u> <u>는 경우 예전취락이 총 세대 중 30</u> <u>퍼센트 이상 거주하는 부락을 말한</u> <u>다.</u></p>	<p><삭 제></p>
<p>제3조(자연부락 현황) <u>자연부락현황은</u> <u>별표와 같이 한다.</u></p>	<p><삭 제></p>
<p>제5조(통장후보자 신청 공고) ① 동장 은 통장을 위촉할 사유가 발생하였 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 시한 공고문을 15일 이상 공고하여 통장후보자(이하 “후보자”라 한다) 를 공개 모집하여야 한다.</p> <p>1. ~ 5. (생략)</p> <p>6. <u>기타</u> 필요한 사항</p> <p>② ~ ④ (생략)</p>	<p>제5조(통장후보자 신청 공고) ① ----- ----- ----- ----- ----- ----- ----- -----</p> <p>1. ~ 5. (현행과 같음)</p> <p>6. <u>그 밖에</u> -----</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제7조(후보자 등록 제한) 동장은 후보 자 중 제출 서류를 확인한 결과 다</p>	<p>제7조(후보자 등록 제한) ----- -----</p>



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후보자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1. (생략)

2. 조례 제6조에 따른 통장 위촉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생략)

제9조(위원회 회의·심사) ① 위원회는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회의를 진행하며 후보자를 심사한다.

② 심사는 지역사회 기여도, 통장 업무수행능력, 면접 평가 등이며, 심사 기준 및 배점은 별지 제5호서식의 후보자 심사기준표에 의한다.

③ ~ ④ (생략)

제10조(심사 결과 통보 및 위촉순위)

① 위원회는 심사결과를 별지 제6호 서식의 통장위촉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동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생략)

-----.

1. (현행과 같음)

<삭제>

3. (현행과 같음)

제9조(위원회 회의·심사) ① -----
-- 과반수-----
-----.

② -----

----심사기준표에 따르며, 해당 통 지역주민의 세대주 동의사항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심사 결과 통보 및 위촉순위)

① ----- 별지 제6호서식

-.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통장증 발급) ①·②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장증을 발급하거나 회수 할 때에는 별지 제 11호서식에 의거 관리한다.

④·⑤ (생략)

제14조(통장 직무대행) 동장은 통장이 장기출타, 기타 사고로 직무를 3개월 미만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대행자를 반장 중에서 선임할 수 있다.

제13조(통장증 발급)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 따라 -----.

④·⑤ (현행과 같음)

제14조(통장 직무대행) -----
----- 그 밖에 -----

-----.

